

유치원규칙 신·구 대조표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조 ㉠항(①) ㉠호(1)	제11장 ㉠제1장	전문표기 수정
제2장 교육연한 및 학년도 · 학기 · 휴업일	제2장 교육연한 및 학년도 · 학기 · 휴업일	수정,보완,변경,삽입,삭제
제4조(교육연한 및 학년도) 본원의 교육연한은 1~3년으로 하고, 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	제4조(교육연한 및 학년도) 본원의 교육연한은 1~2년으로 하고, 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	변경
제6장 입학, 재입학, 전학, 휴학, 퇴학, 수료 및 졸업	제6장 입학, 재입학, 전학, 휴학, 퇴학, 수료 및 졸업	수정,보완,변경,삽입,삭제
제14조(입학시기) ① 입학시기는 연중으로 (9월30일까지로)하며, 학급 정원수가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중도 입학이 가능하다. 전 조항의 만4세, 만5세	제14조(입학시기) ① 입학시기는 연중으로 (9월30일까지로)하며, 학급 정원수가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중도 입학이 가능하다. ② 유아 모집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유아를 선발한다. 전 조항의 4세, 5세	삭제,삽입,변경
제17조(중도입학) 본 유치원의 중도입학 시기는 9월 30일까지로 한다.	제17조(중도입학) 유치원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중도입학을 허가한다.	삭제, 삽입
제19조(휴학/퇴학) 질병 등 기타 가정사유로 휴학이나 퇴학을 희망할 경우 원장은 휴원서 및 퇴학서를 받아 처리한다.	제19조(휴학/퇴학) 질병 등 기타 가정사유로 휴학이나 퇴학을 희망할 경우 원장은 휴원서 및 퇴학서를 받아 처리한다. 4. 유아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② 휴학은 학년도를 기준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최소 1개월에	삽입

현행	개정안	비고
	<p>서 최대 3개월까지 할 수 있다. 휴학 기간이 종료되면 복학 처리하여야 한다.</p>	
<p>제7장 생활지도 및 교육활동 보호</p>	<p>제7장 생활지도 및 교육활동 보호</p>	<p>수정,보완,변경,삽입,삭제</p>
	<p>제21조(적용) 「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제 14조 2항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생활지도의 기준은 「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」를 따른다.(상위법이 개정될 경우 반영하여 적용한다)</p> <p>제22조(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) ① 본원의 생활지도의 범위는 「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」에 따른 1~9호까지로 한다. 그 밖에 원장 및 교원의 전문적 판단으로 생활지도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행위로 한다. (표 생략)</p> <p>② 위 사항에 대해 「유치원 교원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고시」 제2장 제5조부터 제8조에 의거 유아에게 조언, 상담, 주의, 훈육할 수 있다. 보호자는 원장과 교원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.</p> <p>③ 보호자는 원장과 교원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.</p> <p>제23조(분리보관 가능 물품) 다음 각호의 물품은 유아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. (표생략)</p> <p>제24조(기타) 이 규칙 외의 기타사항은 교육관계 법령과 고시를 준용한다.</p>	<p>삽입</p>